

1. 개정이유

법문 표현의 명확성을 정비하기 위해 해당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내용 외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행규칙 제39조 ‘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’ 조항에서 법 제38조제1항 ‘사업의 폐업’만을 인용하고 ‘노선의 폐지’에 대한 내용은 인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 제목에서 이를 포함하고 있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‘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’으로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6. 30. ~ 8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 제목 “(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)”를 “(항공기
사용사업의 폐업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<u>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</u>) (생 략)	제39조(<u>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</u>) (현행과 같음)